

# 서울특별시 AI 양재 허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215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LG,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300여 개의 R&D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집적한 양재 일대를 전 산업의 기반기술인 AI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AI 특화 기업 지원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한 앵커시설로서 「AI 양재 허브」를 위탁운영하고 있음
- 나.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신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고, 2023년 5월 AI 혁신 지구의 산학연 융복합 생태계 구축 및 AI+X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AI 지원센터(가칭)가 개소·운영 예정으로 위탁 공유재산이 추가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현 위탁시설 개요

- 위탁시설 : 한국교총회관, 하이브랜드빌딩, 희경빌딩, AI교육센터
- 위치 : 서초구 양재동, 우면동 일대
- 규모 : 연면적 18,212㎡ ※ '23.5. AI지원센터(10,020㎡) 추가 예정
- 수탁기관 :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-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
- 운영인력 : 센터장 포함 18명
- '22년 예산 : 6,824백만원(민간위탁금)

○ 시설현황

| 건물명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| 사용면적<br>(㎡) | 사용층         | 개소<br>시점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한국교총회관             | 서초구 태봉로 114 | 4,000       | 지상 1·5·6·8층 | '17.12.        |
| 하이브랜드빌딩            | 서초구 매현로 16  | 2,958       | 지상 12·13층   | '19.06.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,393       | 지상 13·14층   | '21.02.        |
| 희경빌딩(B·C동)         | 서초구 매현로8길   | 3,743       | 지하1층~지상 4층  | '20.01.        |
| 희경빌딩(F동)           |             | 1,795       | 지하1층~지상 4층  | '20.07.        |
| 희경빌딩(D·E동)         |             | 3,225       | 지하1층~지상 4층  | '21.04.        |
| AI교육센터             | 서초구 태봉로 108 | 1,098       | 지하1층~2층     | '20.06.        |
| AI지원센터(가칭)<br>(신규) | 서초구 태봉로 108 | 10,020      | 지하1층~지상 7층  | '23.05<br>(예정) |

나. 위탁개요

- 위탁사무 : AI 양재 허브 운영
- 위탁기간 : '23. 1. 1. ~ '25. 12. 31.(3년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위탁시설 : 한국교총회관, 하이브랜드빌딩, 희경빌딩, AI교육센터, AI지원센터(추가)

《 AI 지원센터(추가 위탁시설) 개요 》

- 위치 : 서초구 태봉로 108
- 규모 : 지하1층/지상7층, 연면적 10,020㎡
- 주요시설 : 회의 및 교육공간, 소룸, 공동연구공간, 연구기관 및 기업입주공간
- 주요기능 : AI 혁신지구 앵커 및 AI+X 핵심거점 역할 수행
  - 산학연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유공간 중점 제공
  - 공동연구 및 소통, 활발한 시민참여, AI 인재양성 공간으로 활용

- 소요예산 : 26,965백만원(3년)
  - '23년 7,910백만원, '24년 9,074백만원, '25년 9,981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## 다. 주요 위탁내용

- AI 클러스터 활성화
- AI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
- AI+X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
- AI 분야 최고수준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
-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
- AI 양재 허브 시설 관리 및 운영

## 라. 민간위탁 추진 경위

| 구분 | 위탁기간                      | 수탁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탁자 선정방법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1차 | '17.08.01.~<br>'20.06.30. | 한국과학기술원(KAIST)-(주)모두의연구소<br>컨소시엄 | 공개모집     | 최초위탁 |
| 2차 | '20.07.01.~<br>'22.12.31. | 국민대 산학협력단-한국전자통신연구원<br>컨소시엄      | 공개모집     | 재위탁  |

## 마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(시장의 책무), 제6조(전문인력 양성), 제7조(창업 및 기술지원 등) 및 제17조(사무의 위탁)
  -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AI 양재 허브는 AI 융복합 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공공·민간·대학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기업 간 교류 협업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함
- 이를 위해, AI 분야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,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, AI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, 산업간 융복합 네트워킹 등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·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 필요

바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2.5.12. 개최) 심의 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」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전문인력 양성)**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·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·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.

**제7조(창업 및 기술지원 등)**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·교육 및 상담
2.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
3. 디지털 전환 지원

4.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7조(사무의 위탁)**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과 경진대회, 관계기관의 지정·운영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」

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내·외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2.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5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바이오AI산업과 AI양재팀 정승환 (☎2133-8728)